

#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5
----------	-----

제출년월일 : 1994. 11.

제출자 : 안산시장

## □ 개정이유

- 이 조례 제정의 근거법인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적립하여 본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94. 3. 16 지방자치법이 특정사업을 위한 자금적립은 불가한 것으로 개정되어 중소기업 육성사업의 추진을 계속하기 위하여는 기금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이 조례를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코자 함.
-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에 의거 용자받은 중소기업은 이 조례에 의거 용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94. 4. 18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운전자금과 구조조정자금을 함께 관리하는 것으로 전면 개정되었기 우리시 조례가 부합되지 않으며, 시(군)단위에서는 구조조정자금을 취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도·시 중복 용자 금지 조항을 삭제코자 함.
- 금융실명제 및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용자금의 확대지원(1억 원 이내→2억 원 이내)하여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적극 기여하고자 함.

## □ 주요개정내용

-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한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조성 재원 명시 (안 제3조)
- 시장은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기금의 용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에 한정 (안 제4조)

- 용자대상업체의 조정  
(안 제5조)
  - 삭제 : 공예품 생산업체
  - 추가 : 수출업체,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업체
- 용자신청시 업체에서의 자체 평가 항목 삭제 (제7조 제2항)
- 용자조건에 경기도중소기업 육성자금용자조례에 의하여 용자받은 업체는 시  
자금의 용자대상에서 제외 조항을 삭제(제8조 제3항)
-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용자금의 확대지원  
(안 제9조 제1항)
- 대출절차, 이자불입, 상환방법등 명시 (안 제9조 제6항)
- 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시 자료제출 요구 조항 명시 (안 제14조 제2항)

##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33조 개정 조문
- 경기도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안산시중소기업 육성자금용자조례

#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용자 조례 개정조례(안)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용자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에 용자 지원되는 운전자금 등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라 함은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시장과 협약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 설치 및 재원) ①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 예산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자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응자상환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재원으로 조성한 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 예금 또는 개발신탁 등 수익성 예금으로 예탁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시장은 조성된 기금의 범위안에서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응자 지원한다.

③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중 "필한"을 "필하고 가동중인"으로 하며,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수출업체
3. 지역 경제 기여도가 높은 업체

제6조 중 "매년도 초에"를 "매회 용자 실시전에"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기타 제출서류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 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용자대상자 우선순위는 평점항목을 정하여 고득점순으로 결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용자는 운전자금에 한하며 업체당 대출 한도액은 1억원 이내로 한다"를 "업체당 대출 한도액은 2억원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로 하며, 제3항 중 "보상금"을 "보전금"으로 하고, 제4항 중 "보전에"를 "보전금 지급에"로 하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대출절차, 이자불입 또는 상환방법등은 시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10조 중 "금융기관"을 "시장"으로, "시장"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자금의 운영상황을 매월"을 "기금의 관리·운용상황을 매분기"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자금 용자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용자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 중소기업 육성자금 응자 신청서

업 체 현 황	업체명			주생산품목			
	대표자			전화번호			
	자산총액	백만원		총매출액	백만원		
	소재지	주사무소	안산시 동		번지		
		공장	안산시 동		번지		
	규모	대지	m'	상시	계	사무직	생산직
		건평	동	m'	종업원		
신청	신청금액	백만원		자금용도			
금액	응자기간	년 개월		입주일자			

### 사업계획 (개요)

위와 같이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응자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응자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산시장귀하

##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li> <li>2.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응자지원되는 운전자금 등을 말한다.</li> <li>3. "금융기관"이라 함은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시장과 협약된 금융기관을 말한다.</li> </ol>
<p>제3조(자금조성) ①이 조례에 의한 읍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은 시비와 보조금 기타 자금으로 조성한다.</p> <p>②제1항의 자금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자금으로 편입하여야 한다.</p>	<p>제3조(기금설치 및 재원) ①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 일반회계 예산 출연금</li> <li>2. 금융기관의 출자금</li> <li>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li> <li>4. 기타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은자상환금</li> </ol>

#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u>제4조(자금 관리) ①</u> 자금은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관리하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p> <p><u>②</u> 시장은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또는 대여금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한다.</p> <p><u>③</u> 금융기관은 조성된 자금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요청에 의거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융자한다.</p>	<p><u>제4조(기금의 관리·운용)</u> (삭 제)</p> <p><u>①</u> 시장은 재원으로 조성한 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또는 개발신탁 등 수익성예금으로 예탁하여 관리·운용한다.</p> <p><u>②</u> 시장은 조성된 기금의 범위 안에서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융자지원한다.</p> <p><u>③</u>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p>
<p><u>제5조(융자 대상업체)</u> 주 사무소와 공장이 안산시내에 소재하고 공장등록을 <u>필한</u>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예품 생산업체</li> <li>2. 유망 중소기업체 (신 설) (신 설)</li> <li>3.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li> </ol>	<p><u>제5조(융자 대상업체)</u> 주 사무소와 공장이 안산시내에 소재하고 공장등록을 <u>필하고</u> 가동중인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 제2호와 같음)</li> <li>2. 수출업체</li> <li>3. 지역 경제 기여도가 높은 업체</li> <li>4. (현행 제3호와 같음)</li> </ol>

#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u>매년도 초에</u> 융자금총액, 한도액, 조건 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p> <p>제7조(융자신청) ①융자를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li> <li>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li> <li>3. 중소기업 입증자료</li> </ol> <p>(신 설)</p> <p>②제1항에 의하여 융자를 신청할 때에는 업체별 당해 기업체에 대한 신용정도, 자산상태, 운영실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p>	<p>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u>매회 융자 실시전에</u> 융자금총액, 한도액, 조건 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p> <p>제7조(융자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li> <li>2. (현행 제3호와 같음)</li> <li>3. 기타 제출서류</li> </ol> <p>(삭 제)</p>
<p>제8조(융자대상자 선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생략)</li> <li>② (생략)</li> </ol> <p>③경기도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에 의하여 융자 받은 중소기업은 이조례에 의한 융자 대상에서 제외한다.</p>	<p>제8조(융자대상자 선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현행과 같음)</li> <li>② (현행과 같음)</li> </ol> <p>③융자대상자 우선순위는 평점 항목을 정하여 고득점순으로 결정한다.</p>

##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 안 )
<p>제9조(용자조건) ① 자금의 <u>용자는 운전자</u>  <u>금에 한하며 업체당 대출 한도액은 1억</u>  <u>원 이내로 한다.</u></p> <p>② (생략)</p> <p>③ 제2항의 저리 용자에 따른 일반 대출      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      기관에 <u>보상금</u>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 <u>보상금은 제3조 제2항에 의한 이자수</u>  <u>입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u></p> <p>④ 제3항에 의한 이자 <u>보전에</u>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p> <p>⑤ (생략)  <u>(신설)</u></p> <p>제10조(추가용자) <u>금융기관은 연도 중 수</u>  <u>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 내에서 시장과</u>  <u>협의하여 추가 용자할 수 있다.</u></p>	<p>제9조(용자조건) ① 자금의 <u>업체당 대출</u>  <u>한도액은 2억 원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2항의 저리 용자에 따른 일반 대출      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      기관에 <u>보전금</u>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 <u>보전금은 제3조 제2항에 의한 이자수</u>  <u>입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u></p> <p>④ 제3항에 의한 이자 <u>보전금 지급에</u> 관      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      하여 결정한다.</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u>대출절차, 이자불입 또는 상환방법 등</u>  <u>은 시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u>  <u>정한다.</u></p> <p>제10조(추가용자) <u>시장은 연도 중 수시</u>  <u>회수되는 자금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u>  <u>과 협의하여 추가 용자할 수 있다.</u></p>

##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 안 )
<p>제14조(보고 등) 금융기관은 <u>자금의 운영상황을 매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p>(신 설)</p>	<p>제14조(보고 등) ①금융기관은 <u>기금의 관리·운용상황을 매분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p>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자금 용자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p>

# 지방자치법

## 신·구 조문 대비표

개정전	개정후
<p>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u>자금을 적립하거나 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u></p> <p>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u>자금의 적립 및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u></p> <p>③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 를 말한다.</p>	<p>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u>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u></p> <p>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u>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u></p> <p>③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 를 말한다.</p>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 신청서(별지제1호서식)

2. 사업 계획서(별지제2호서식)

3. 중소기업 입증자료

②제1항에 의하여 융자를 신청할 때에는 업체별 당해 기업체에 대한 신용 정도, 자산상태, 운영실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대상자 선정)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자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 순위를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융자 받은 중소기업은 이조례에 의한 융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융자조건) ①자금의 융자는 운전자금에 한하여 업체당 대출 한도액은 1억원 이내로 한다.(개정 '93.11.8 조례 제503호)

②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 금리보다 2% 내지 3% 낮게 정한다.

③제2항의 저리 융자에 따른 일반 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은 제3조 제2항에 의한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한 이자 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융자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개정 '93.11.8 조례 제503호)

제10조(추가융자) 금융기관은 년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 내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11조(자금상환) ①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만기일 이전에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개정 '93.11.8 조례 제503호)

②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증은행의 연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금의 지원으로 인한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2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타 기업 운영에 관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시장 또는 금융기관이 필요한 때에는 자금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자금관리 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등) 금융기관은 자금의 운영상황을 매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93.11.8 조례 제5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4. 기타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응자상환금

②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체에 대한 응자

2. 금융기관의 저리용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하며 구조조정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 설정하여 계리한다.

②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의 관리, 운용업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기금의 응자는 금융기관등에 위탁하여 행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내 모든 금융기관등이 응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은 일부금융기관등에 한해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여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 2 장 구조조정자금의 관리·운용

**제7조 (응자대상)** 구조조정자금의 응자대상은 경기도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자동화 및 시설근대화 추진 중소기업

2. 기술개발 추진 중소기업

3. 정보화 추진 중소기업

4. 사업전환 추진 중소기업

5. 대기업 사업이양 추진 중소기업

6. 창업 중소기업

7.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제8조 (융자계획의 공고) 도지사는 매년 융자실시전에 융자총액, 융자한도액, 융자조건, 융자절차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신청) 구조조정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대상자 선정) ①도지사는 제9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현지실사를 거친 후 융자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②융자대상업체 선정기준, 융자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도지사는 제10조에 의한 융자대상업체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자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경제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지방공업기술원장
2.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부장
3.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기지회장
4. 도의회 상공위원회 의원 2인
5. 상공회의소 회장 1인
6. 기타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 공업과장이 된다.

⑦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의 위원중 도 소속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기도위원회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⑨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융자조건) ① 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7억 원 이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8% 이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③ 융자기간은 8년이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④ 대출절차, 이자불입 또는 상환방법등은 도지사가 기금관리를 위탁한 금융기관등(이하 “기금관리은행”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 3 장 운전자금의 관리 · 운용

제13조 (융자대상) 운전자금의 융자대상은 경기도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유망중소기업체
2. 해외수출업체
3.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업체
4. 구조조정자금 융자업체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14조 (융자계획의 공고) 융자계획의 공고에 관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5조 (융자신청 및 대상업체 추천)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융자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정한 범위내에서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융자대상업체를 추천한다.

제16조 (융자대상자 선정) ① 도지사는 제15조에 의한 융자대상업체를 추천 받은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운전자금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업체를 결정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시 현지실사를 위하여 해당기업을 진단한 후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③ 융자대상업체 선정기준, 융자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운전자금 융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7조 (융자조건) ① 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2억 원이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②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보다 2~3% 낮게 정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저리용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용자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⑤대출절차, 이자불입 또는 상환방법등은 도지사와 기금관리은행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 제 4 장 보칙

제18조 (위탁수수료 지급) 도지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전문기관의 협조) ①도지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제10조나 제16조에 의한 현지실사 또는 지원업체에 대한 경영, 기술 지도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변경사항 통보) 용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도지사와 용자받은 금융기관등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사후관리) ①도지사와 금융기관등은 필요한 경우 용자지원업체의 용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도지사와 금융기관등은 용자금을 사업목적외에 사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용자금의 반환등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 (보고등) ①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은행은 용자금의 운영상황을 매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금관리은행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23조 (기금관리 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담당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 (결산 및 보고) ①도지사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4. 4. 18 조례 제246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자금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이전에 지출된 자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